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4. 19.(월) 배포</p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일	2021. 4. 19.(월) 회의 종료 시(15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4. 19.(월) 회의 종료 시(15:00) 보도 가능				
담당과	특수교육정책과	담당자	과장	김선미 (☎ 044-203-6569)	
			교육연구관	진창원 (☎ 044-203-6563)	
			교육연구사	김주홍 (☎ 044-203-6954)	
담당과	사립대학정책과	담당자	과장	송선진 (☎ 044-203-6912)	
			서기관	박소하 (☎ 044-203-6931)	
			주무관	김경용 (☎ 044-203-6934)	
담당과	혁신행정담당관	담당자	과장	김정연 (☎ 044-203-6020)	
			사무관	조진행 (☎ 044-203-6053)	

교육부, 『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』 개최

◆ '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'(2018.12.) 추진현황 점검

-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
-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지원 사업 신규 추진

◆ 사학의 투명성·공공성 선도 학교법인 5개 선정, 2년간 20억 원 지원

- 2021년 신규 '사학혁신 지원사업' 본격 추진
- 법인(대학)은 '회계 투명성 확보' 필수 추진, 법인의 책무성·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사례 도출해야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4월 19일(월), 제19차 『교육신뢰회복추진단(이하 추진단) 회의』를 개최하여, 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과 ②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(시안)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교육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고,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들을 점검하였다.

* (과제현황) 2개 분야 5대 핵심과제,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

- 아울러,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‘사학혁신지원사업(시안)’이 도입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지, 교육실패회복추진단 논의를 통해 검토·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.

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

- 이번 교육실패회복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 ‘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(2018.12.) 이후 추진 현황 점검’ 결과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
- ‘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’은 잇따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서 사안의 재발방지 및 인권보호 예방·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8년에 마련한 대책이다.
- 이 대책은 크게 ①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, ②인권침해 예방이라는 두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[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분야]

- 장애학생 인권 사안의 신속한 감지와 대응을 위하여,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(<https://www.nise.go.kr/onmap>)*를 구축하고,

*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국립특수교육원·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 중

- 피해학생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위치 기반(GPS) 지원기관*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법률, 폭력 피해, 상담, 교육, 의료 등 5개 영역 1,409개 기관이 등록되어 운영 중

<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>



[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> 주요 화면]



[인권보호 지원기관 지역별 검색 기능]



[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·운영]



[모바일 지원 기능]

○ 또한, 관계부처(청)가 협력하여 장애학생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해 왔다.

- 이와 관련하여, 교육부는 올해부터 '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'를 위하여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일부 개정(2019.12.10.)과 예비조사 연구(2020.10.)를 완료하였으며,
- 고용노동부는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기간 중 면담 조사(2019.~)를 매년 실시하고, 보건복지부는 사립 특수학교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대경험 조사(2019, 3년 주기)를 추진해오고 있다.
-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 관리 규정을 개정*하여 정기실태조사를 특수 학교에 한하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, 반기별 사회복지요원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* 병무청 훈령 제1546호(2018.12.20.) 개정

<부처(청)별 인권침해 조사 개요>

부처(청)	추진 내용	주기
교육부	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	매년(2021년부터)
	학교폭력 실태조사	매년
고용노동부	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	매년
보건복지부	법인 운영 사립특수학교 거주시설 장애학생 면담조사	3년
병무청	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	반기

-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‘장애 학생 위기행동 대처 지침(매뉴얼)’을 개발·보급하고, 학교 내 심리 안정실*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

* 위기행동 감소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 활용 교구 등으로 구성된 대안적 교실(2020. 98개교)

-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**더봄학생***의 인권보호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인권지원단-경찰서-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를 갖추어 상담 및 순찰을 강화하였으며,

*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(2021. 3,133명)

-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정기현장 지원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여 학생과 교직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 하였다.

[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분야]

-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3년간(2019.~2021.) 특수교사를 3,600여 명 증원하고, 특수학교 11개교와 특수학급 1,250학급 이상을 신·증설하였다.

- 이를 통해,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 하고,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 추진하였으며,

※ 특수학교 신설: (2019) 2개교 → (2020) 4개교 → (2021) 5개교

특수학급 신·증설: (2019) 429학급 → (2020) 556학급 → (2021) 250학급 이상

-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던 강원태백미래학교와 서울 인강학교는 2019년 3월과 9월 각각 공립으로 전환하였다.

○ 또한, 학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교원, 인권지원단 담당자,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 하였으며,

※ (2019) 10개 과정 1,072명 이수 → (2020) 15개 과정 6,739명 이수

○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 또는 자격 취득자를 우선 배치*하도록 하고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**하였다.

*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규정(2019.2.20.) 개정

** 사회복지요원 관리규정(2018.12.20.)에 관련 조항 신설

○ 아울러, 비장애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,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,

○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 교사가 협력하는 '정다운학교'를 운영하고 있으며,

※ 정다운학교 운영: (2018) 40개교 → (2019) 74개교 → (2020) 92개교

-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*을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.

*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교육 관련 전문가(특수교육교수, 특수교사, 심리상담사, 치료사, 사회복지사, 소아정신과 의사 등)로 구성된 지원 조직 (2020. 137개단)

□ 한편, 교육부는 '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' 추진 성과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

○ 이 대책 추진에 관한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, 2020년 평균 4.31점 (5점 만점)으로 2019년 4.21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.

[향후 추진 계획]

- 교육부는 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살펴본 ‘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’ 추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- 올해부터 ‘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’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
-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 중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,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- 또한,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,
 -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(특수교사 150명 예정) 및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(특수교육대상자 600명 예정)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

-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‘사학혁신 지원사업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.
-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, 사학혁신 추진,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,
 -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·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
-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·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,
 -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(대학)이 투명성·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(인센티브)을 해주는 방식이다.
- 시안에 포함된 법인(대학)의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 - 우선, '회계 투명성 확보'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.
 - 교육부가 '회계 투명성 확보'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,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.

〈 필수과제 : 회계 투명성 확보 〉

예·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

-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
- 이사회에서 예·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
- 예·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

재정·회계 정보 공개

-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 확대 및 결산 상세 내역 공개
- 적립금 자원,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
- 수익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
-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

내부 회계 관리·감독

-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·운영
 - ※ 법인·대학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내부회계 프로세스 마련, 위험 요인(리스크) 식별 및 통제를 위한 설계 및 시스템 구축)
-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·정비
-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

외부 회계 감독

- 한국사학진흥재단 예·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

- 필수 과제 외에도 ①**법인 운영의 책무성**, ②**법인 운영의 공공성**, ③**교직원 인사의 민주성**, ④ **자체혁신** 등 4개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〈 선택과제 : 4개 영역 7개 모형 〉

- ① **법인 운영의 책무성**(①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, ② 개방이사 역할 강화),
- ② **법인 운영의 공공성** (① 열린 이사회 운영, ② 이사 구성의 개방성·합리성 강화),
- ③ **교직원 인사 민주성** (① 인사 공정성 강화)
- ④ **법인(대학) 자체혁신** (① 구성원 참여·소통 강화, ② 자체 감사 강화)

[붙임2]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택과제 및 모형(안)

- 따라서, 선정된 법인(대학)의 경우 **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, 회계 운영의 투명성**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교육부는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며,
 - 법인(대학)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(컨설팅)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할 계획이며 그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·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“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.”라고 말하며,
 - “아직까지는 모든 정책이 수요자들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,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- 또한 사학혁신과 관련하여 “교육부는 사학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며,
 - “국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사학혁신 관련 법률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장애학생 인권보고 종합대책 주요내용
2. 사학혁신지원사업 선택과제



◇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·예방체계 구축 등 총 2대 분야, 5대 핵심과제,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

비전

장애학생 삶의 질이 향상되는 포용사회 실현

목표

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

	핵심과제	중점 추진과제
감지 및 대응 체제	①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	①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체계 구축 ②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③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
	②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	④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⑤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⑥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
예방 체제	③ 인권보호 여건 개선	⑦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⑧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
	④ 인권보호 역량 강화	⑩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⑪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⑫ 사회복지무요원 배치·관리 및 교육 강화
	⑤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	⑬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⑭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⑮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·홍보 강화 ⑯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 운영

- 사학혁신 4개 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의 모형을 선택하여 추진
 - 이 중 1개 모형은 반드시 모형에서 제시한 필수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 추진하고, 나머지 1개 이상 모형에 대해서는 추진 과제의 내용 및 과제 수를 법인 자율로 설정

< 선택과제 : 4개 분야 (7개 모형) >

<p>법인 운영의 책무성</p>	<p>모형 1 :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법인부담금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% 이상 증액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발전계획(특성화, 구조조정 등)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- 법인·대학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정시간 원하는 주제(사학 관련 제도 변화, 회계·노무·법률 등) 교육 이수 의무화 - 구성원 대상 인권센터 마련 <p>모형 2 : 개방이사 역할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(이사정수의 1/4)보다 추가 선임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성 있는 개방이사 확보와 역할 강화 - 개방이사 대상 안건 사전 설명 강화 - 개추위 운영의 개방성·공정성 제고(개추위 구성 시 이사 배제 등) -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
<p>법인 운영의 공공성</p>	<p>모형 1 : 열린 이사회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사회 안건 사전 안내 - 이사회 참관 제도 -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(현행 기준 : 1년) -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 제도 마련 - 교직원과의 주기적 간담회

	<p>모형 2 : 이사 구성의 개방성·합리성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이사 제도 도입 - 교육이사 선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- 이사 중임기간 제한 -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-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 - 감사 상호간 친족 제한
<p>교직원 인사 민주성</p>	<p>모형 1 : 인사 공정성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공개 경쟁 채용(채용위원회 구성, 외부 위원 1/2이상)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(승진, 재임용 등) - 총장 선임 과정의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- 채용 점검 위원회 운영(외부 위원 1/2이상) - 주기적 형사 처벌 전력 확인(당연 퇴직 대상자 점검) -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1/2이상으로 구성
<p>법인 (대학) 자체혁신</p>	<p>모형 1 : 구성원 참여·소통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법인과 대학의 소통 촉진을 위한 상시기구 운영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구성 주체별 견제 및 균형 확보 - 법인-대학 간 갈등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<p>모형 2 : 자체 감사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 : 상시 감사단 설치·운영(채용, 입시, 연구 윤리 등) • 기타 과제 예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감사 내용과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제도 운영 - 감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- 이사회의 주요 투자 또는 매각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 - 학과 개편 및 폐과 등에 대한 적절성 심사 - 교직원 임금체계 변동에 대한 의견수렴 적절성 평가 등